

의안번호	2203790
의 퇴 인	허종식 의원
회 답 일	2024. 12. 3.
추계번호	24A364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3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억 6,300만원(연평균 4억 1,300만원)**으로 추계
- 추계된 비용 중 국가재정 부담분은 안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으로 5년간 총 5억 7,000만원(연평균 1억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지방재정 부담분은 안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5년간 총 14억 9,300만원(연평균 2억 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제1항)	270	—	—	270	—	540	108
환경보전계획 수립 (안 제9조제1항)	747	—	—	747	—	1,493	29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안 제15조제3항)	6	6	6	6	6	30	6
합 계	1,023	6	6	1,023	6	2,063	413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제1항 (지역활성화 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①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②폐지지역의 창업 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③대체산업 전문 인력의 수급분석 및 육성, ④지역에 특화된 산업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지역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은 전력산업 기반기금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안 제7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이외의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8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의제)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¹⁾ 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봄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9조제1항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²⁾ 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0조 (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각 호 ³⁾ 의 사업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폐지지역 대체산업으로 우선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1조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관련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2조 (고용안정지원 등)	국가는 폐지지역에 「고용보험법」 제19조 ⁴⁾ 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제1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대체산업 사업장 전환배치·전직, 실직 시 생계 및 주거 지원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3조 (지원기금의 설치)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제1항)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제2항)	의무규정
	안 제1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②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대체산업 사업장 전환 배치·전직, 실직 시 생계 및 주거 지원비 지원, ③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	의무규정
	안 제15조제2항·제3항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제1항)	의무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둠(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16조 (대체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사업자가 대체산업으로 원활하게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경영자금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차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7조 (공공시설 등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폐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함(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학교·병원 및 관광·숙박·체육 및 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 16. (생략)

4)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국가 등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
3	안 제6조제1항 (지역활성화 사업 시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업 또는 보조사업 등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창업과 대체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국가사업 중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만을 대상으로 대체산업의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음. 다만,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이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 [참고자료 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원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청남도의 사례를 보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의 직무전환과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 관련 사업 예산(도비)은 총 39억 2,600만원임 * [참고자료 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관련 사업 현황
	안 제7조 (자금 등의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8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의제)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간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지원 사업, 신산업 투자 유치 사업 등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준용 가능한 기존 재정 투입 사례가 없으며, 향후 지정될 지역의 수도 알 수 없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⁵⁾
5	안 제9조제1항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
6	안 제10조 (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추진)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7	안 제11조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하거나, 석탄화력발전소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종 전환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5]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5)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 지역은 이미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가 다른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2조 (고용안정지원 등)	×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 중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없음
9	안 제13조 (지원기금의 설치)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 하면서 기존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안 제14조 (기금의 용도)		
	안 제15조제2항·제3항 (기금의 운용·관리)	○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기금 사업의 예산 규모와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제3항)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당 지급 비용 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6조 (대체산업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관련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 시·도별로 지원 중인 기존 사업의 현황을 모두 알 수 없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실시될 신규 사업의 규모 또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직무 재배치 등을 위해 재배치(전환)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5]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관 사업 중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재정으로 업종 전환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며, 발전사업자가 자체 재원으로 협력사에 대하여 직무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도 발전사별 직무전환 지원사업 집행 실적: 서부발전(2.1억원), 중부발전(0.2억원), 동서발전(0.9억원), 남동발전(0.4억원), 남부발전(0.3억원)
11	안 제17조 (공공시설 등 설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하여 도로·항만·수도, 학교·병원 및 관광·숙박·체육·문화시설 등의 사회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지원하는 경우 국가 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되고 있는 지방도 건설 사업은 총 2건(2025년 국비 예산 총 105억원), 상·하수도 관리·정비 사업은 총 27건(2025년 국비 예산 총 745억원)임 * [참고자료 6]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지방도 건설 현황 * [참고자료 7] 환경부 국비 지원 지방 상·하수도 관리·정비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안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 및 감면 요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세수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에 사용되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제1항), **환경보전계획 수립(안 제9조제1항)**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5조제3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5조제1항6)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안 제15조제3항7)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9조제1항8)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해당 비용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제1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 부처가 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9)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추계기간 동안 시행당해 연도인 2026년과 3년 이후인 2029년에 각각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6) 안 제5조(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안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8) 안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인력 및 예산으로 실시하여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안 제9조제1항) 환경보전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환경영향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위한 통합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가정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이 수립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군·구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 인천 옹진군(영흥),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시·보령시·태안군, 경남 사천시(삼천포)·하동군
 - *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알 수 없으나,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실시 주기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하고 연구용역비는 2026년 및 2029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다른 시·군·구에서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안 제15조제3항)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8명, 회의 횟수는 연 3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⁰⁾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 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정수·구성 및 회의 횟수에 관한 사항을 알

10)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수 없으므로, 타 부처 소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빈도를 참고하여 가정¹¹⁾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등

- 심의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제1항)

-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 부처가 수행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의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2026년·2029년에 각 2억 7,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4,000만원(연평균 1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11)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사례

위원회명	위원정수(명)			회의 개최실적(회)
		당연직	위촉직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10	3	7	2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10	3	7	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20	10	10	6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10	6	4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15	7	8	2

주: 회의 개최실적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실적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3.8.

[표 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2020	460
평균			27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안 제5조제1항)	270	-	-	270	-	540	1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환경보전계획 수립(안 제9조제1항)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시·군·구에서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연구용역에 대한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지방재정으로 14억 9,300만원(연평균 2억 9,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건당 약 1억 700만원 × 7개 지역 × 2개 연도(2026·2029년) = 14억 9,300만원

[표 4]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관련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남원시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전북 남원시	2017	43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질조사 및 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	강원 삼척시	2017	153
제천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충북 제천시	2018	124
평균			107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환경보전계획 수립 (안 제9조제1항)	747	-	-	747	-	1,493	2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5조제3항)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000만원(연평균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8명) × 회의 횟수(3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600만원

[표 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5조제3항)	6	6	6	6	6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 기본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비용은 각각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단위: 용량(MW), 발전량(GWh)]

발전소명(지역)	대수	용량	호기	용량	준공	호기	용량	준공	발전량('23)
삼천포화력(경남)	4	2,120	#3	560	'93	#5	500	'97	11,278
			#4	560	'94	#6	500	'98	
영흥화력(인천)	6	5,080	#1	800	'04	#4	870	'08	22,174
			#2	800	'04	#5	870	'14	
			#3	870	'08	#6	870	'14	
여수화력(전남)	2	669	#1	340	'16	#2	329	'11	3,193
보령화력(충남)	6	3,050	#3	550	'93	#6	500	'94	15,990
			#4	500	'93	#7	500	'08	
			#5	500	'93	#8	500	'08	
신보령화력(충남)	2	2,038	#1	1,019	'17	#2	1,019	'17	11,704
태안화력(충남)	10	6,100	#1	500	'95	#6	500	'02	28,163
			#2	500	'95	#7	500	'07	
			#3	500	'97	#8	500	'07	
			#4	500	'97	#9	1,050	'16	
			#5	500	'01	#10	1,050	'17	
하동화력(경남)	8	4,000	#1	500	'97	#5	500	'00	16,889
			#2	500	'97	#6	500	'01	
			#3	500	'98	#7	500	'05	
			#4	500	'99	#8	500	'05	
삼척그린화력(강원)	2	2,044	#1	1,022	'16	#2	1,022	'17	8,867
당진화력(충남)	10	6,040	#1	500	'99	#6	500	'06	27,197
			#2	500	'99	#7	500	'07	
			#3	500	'00	#8	500	'07	
			#4	500	'01	#9	1,020	'16	
			#5	500	'05	#10	1,020	'16	
북평화력(강원)	2	1,190	#1	595	'17	#2	595	'17	6,067
고성(경남)	2	2,080	#1	1,040	'21	#2	1,040	'21	12,247
신서천(충남)	1	1,018	#1	1,018	'21				3,523
강릉안인(강원)	2	2,080	#1	1,040	'22	#2	1,040	'23	9,985
반월열병합*(경기)	1	83	#1	83	'90				368
대구염색열병합*(대구)	1	73	#1	73	'04				0.7
SGC에너지*(전북)	1	114	#1	114	'08				1,962
새만금열병합*(전북)	2	303	#1	152	'15	#2	152	'15	2,376
금호여수열병합*(전남)	2	264	#1	119	'09	#2	145	'16	1,661
여수열병합*(전남)	1	48	#1	48	'10				358
구미열병합*(경북)	1	97	#1	97	'91				535
부산염색열병합*(부산)	1	19	#1	19	'93				16
김천열병합*(경북)	1	59	#1	59	'13				393
전북집단지너지*(전북)	1	19	#1	21	'92				106
상공에너지*(전북)	1	10	#1	10	'12				40
포천그린에너지*(경기)	1	170	#1	170	'18				1,338
동해화력(무)(강원)	2	400	#1	200	'98	#2	200	'99	1,876
삼척화력(강원)	1	1,050	#1	1,050	'24				-

주: *는 비중양급전(14대/1,259.2MW), (무)는 무연탄(2대/400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단위: MW)

연도	전환 계획			
	발전설비	내용	이전 지역	설비용량
2025	태안#1	LNG 전환	구미	500
	태안#2	LNG 전환	여수	500
2026	하동#1	LNG 전환	안동	500
	보령#5	LNG 전환	보령	500
	보령#6	LNG 전환	함안	500
	삼천포#3,4	LNG 전환	(미정)	1,120
2027	하동#2,3	LNG 전환	하동	1,000
	삼천포#5	LNG 전환	(미정)	500
2028	하동#4	LNG 전환	하동	500
	삼천포#6	LNG 전환	(미정)	500
	태안#3	LNG 전환	공주	400
2029	동해#1,2	LNG 전환	미정	400
	당진#1,2	LNG 전환	(호남)	1,000
	태안#4	LNG 전환	(미정)	500
2030	당진#3,4	LNG 전환	용인	1,000
2031	하동#5,6	LNG 전환	용인	1,000
2032	태안#5,6	LNG 전환	용인	1,000
2033	—	—	—	—
2034	영흥#1,2	LNG 전환	(미정)	1,600
2035	—	—	—	—
2036	당진#5,6	LNG 전환	(미정)	1,000

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첨단산업 전력공급계획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연번	발전원	발전소	시·도	지원금(2024 예산 기준)
기본 지 원 사 업	1	석탄(유연탄)	태안발전본부	충남	4,986
	2	석탄(유연탄)	당진화력본부	충남	4,749
	3	석탄(유연탄)	영흥화력본부	인천	4,301
	4	석탄(유연탄)	하동화력본부	경남	3,832
	5	석탄(유연탄)	보령화력본부	충남	2,717
	6	석탄(유연탄)	고성하이발전소	경남	2,162
	7	석탄(유연탄)	신보령화력발전소	충남	2,113
	8	석탄(유연탄)	삼천포화력본부	경남	1,934
	9	석탄(유연탄)	삼척발전본부	강원	1,873
	10	석탄(유연탄)	삼척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강원	1,771
	11	석탄(유연탄)	강릉안인화력1,2호기	강원	1,738
	12	석탄(유연탄)	북평화력발전소	강원	1,265
	13	석탄(유연탄)	신서천화력	충남	793
	14	석탄(유연탄)	여수화력발전처	전남	522
	15	석탄(유연탄)	SGC에너지	전북	487
	16	석탄(유연탄)	OCI SE 새만금열병합발전	전북	378
	17	석탄(유연탄)	GS포천그린에너지	경기	213
	18	석탄(유연탄)	구미발전소	경북	103
	19	석탄(유연탄)	반월발전소	경기	67
	20	석탄(유연탄)	김천열병합발전소	경북	54
	21	석탄(유연탄)	부산염색열병합	부산	30
	22	석탄(유연탄)	전북집단에너지	전북	30
	23	석탄(무연탄)	동해화력발전처	강원	503
소계					36,621
특별 지 원 사 업	1	석탄(유연탄)	고성하이발전소	경남	17,031
	2	석탄(유연탄)	삼척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강원	3,000
	3	석탄(유연탄)	강릉안인화력1,2호기	강원	13,916
	4	석탄(유연탄)	신서천화력	충남	70
소계					34,017
합계					70,638

주: 1. 시·도 구분은 발전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¹²⁾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함(재원: 전력산업기반기금)

- 기본지원사업(5451-301): 운영중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추정)발전량에 발전원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2024년 예산 기준 총 6개 발전원, 775개 발전소)
- 특별지원사업(5451-302): 건설중 또는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의 1.5% 범위 내 지원(2024년 예산 기준 총 56개 발전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시군	사업명	사업 개요	2024년도 예산(도비)
1	보령	보령 수소차 특별보급 사업	수소차 구입자 500만원 추가 지원(50대)	250
2	보령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지역연계 육성계획 수립	보령1·2호기 석탄화력 폐지 영향분석 등 연구용역	200
3	보령	에너지 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기업·연구·행정 간 협력 비즈니스 및 창업·교육 지원 공간 마련	1,428
4	보령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전문 활동가 양성	120
5	당진	친환경 버스정류소 표지판 구축	노후 표지판 태양광 LED 교체	594
6	태안	K마린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	노르딕워킹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345
7	태안	해상풍력단지 환경영향조사	풍력단지 해양환경영향 조사 및 이익 공유모델개발	699
8	태안	석탄발전 노동자 역량강화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직무역량교육, 직무전환 지원	150
9	태안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사업	친환경 제품 지원, 에너지 고효율 시설 교체 등	140
합계				3,926

자료: 충청남도

[참고자료 5]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1.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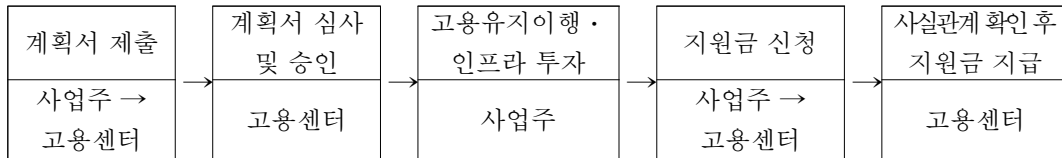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요건)** 최소 임차금액 100만원 이상,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 **(예산)** ('24년) 2,500백만원 → ('25년) 750백만원('24년 승인 기업 계속지원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비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억원 한도 사업주 투자의 50%, 1년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센터에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사업주가 인프라 투자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2.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직무 재배치 등을 위해 재배치(전환)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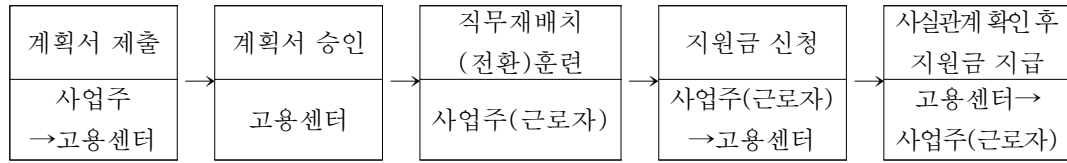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지원요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계획 수립 후 직무를 변경하여 재배치 예정인 근로자에게 직무훈련을 제공하거나 이·전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원
- **(예산)** ('24년) 3,742백만원 → ('25년) 3,742백만원
 - 훈련비: 1,862백만원('25년 신규 660명×2.1백만원+'24년 계속 476백만원)
 - 훈련장려금: 1,680백만원(560명×2백만원×1.5개월)
 - 운영비: 200백만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 훈련비용(실비, 최대 300만원) 지원, 조업손실 보전 훈련장려금 월 200만원(최대 3개월) 지원(사업주)

□ 지원절차

-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직무전환 훈련 등을 이행한 후 지원금 신청·지급



[참고자료 6]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지방도 건설 현황

(단위: 억원)

위치	사업량	사업 기간	추진상황	총사업비			2025년 예산(국비)
				합계	국비	지방비	
충남 서산시 운산면 ~ 당진시 합덕읍 (국지도70호선)	연장 19.1km, 4차로 확장	2014 ~ 2027	· 기본계획 제4차국도 건설계획 반영(16.8) · 실시설계 완료(18.8) · 공사중(19.4~28.3)	1,905	885	1,020	105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 정죽리 (국지도96호선)	연장 14.13km, 4차로 확장	2021 ~ 2030	· 기본계획 제5차국도 건설계획 반영(21.9) · 실시설계 22.4~25.6	970	559	411	-

세부사업명: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40-300~301)

보조율: 70%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7] 환경부 국비 지원 지방 상·하수도 관리·정비 현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현황(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명	사업계획	총사업비			2025년 예산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강원	동해	동해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부곡, 이원 중블록 관 로 28.0km 정비, 블 록 및 유지관리시스 템 구축 각 1식	32,243	21,053	11,190	834	500	334
강원	동해	이원정수장 개량	이원정수장(20,000 m³/일) 통합재건설	75,610	37,805	37,805	13,502	6,751	6,751
강원	동해	동해시 노후상수 관망 정비 (사문, 쇠운)	사문, 쇠운 중블록 관 로 73.4km 정비	43,481	21,741	21,740	4,348	2,174	2,174
충남	보령	성주정수장 개량	성주정수장 (900m³/일) 개량	9,400	4,700	4,700	3,648	1,824	1,824
충남	보령	보령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웅천, 청라 중블록 관 로 19.9km 정비	15,000	7,500	7,500	1,500	750	750
충남	당진	합덕정수장 개량	합덕정수장 (2,400m³/일) 재건설	25,208	12,604	12,604	4,286	2,143	2,143

세부사업명: 노후상수도정비(자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1-306)

보조율: 50~70%

자료: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 현황(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명	사업계획	총사업비			2025년 예산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인천	옹진	2025옹진군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옹진군 관로(12.55km), 물탱크(2개소), 관정(2개소) 설치 등	5,824	4,077	1,747	5,824	4,077	1,747
인천	옹진	백령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백령도해수담수화시설 (2,200m³/일) 신설	37,099	25,969	11,130	4,286	3,000	1,286
인천	옹진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구축공사	북도면 급배수관로 (36.6km)신설	24,482	17,137	7,345	17,011	11,907	5,104
충남	보령	보령지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보령지구 해저 (12.1km)·육상관로 (10.6km) 신설 등	45,000	31,500	13,500	714	500	214

세부사업-내역사업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도서지역식수원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1-301)

보조율: 70%

자료: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황(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

(단위: 백만원)

구분	광역시(도)	기초(시군)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2025년 예산(국비)
하수관로 정비	인천	옹진군	영흥 하수관로정비(확충)	하수관로 L=11.43km	15,716	2,434
하수관로 정비	인천	옹진군	백령 진촌 우오수분리 사업	하수관로 L=13.3km, 맨홀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424개소 등	11,170	828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관로개량 5.2km, 빗물펌프장 3개소	19,333	300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 사업(송정C)	관로개량 3.6km	13,403	500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동해하수관로정비사업 (송정,부곡,북평분구)	하수관로 신설 38.4km	49,560	16,646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목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1단계)	하수관로 신설 44.4km	47,178	2,853
하수관로 정비	강원	동해시	동해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목호1단계)	하수관로 보수 8.8km	7,865	400
하수관로 정비	충남	당진시	하수도중점관리지역(당진배수 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하수관로 신설 3.1km, 빗물펌프장 400톤/분	34,122	500
하수관로 정비	충남	당진시	고대 부곡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관로 신설 8.0km	8,604	1,999
하수관로 정비	충남	보령시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	하수관로 신설 37km	38,073	3,031
하수관로 정비	충남	보령시	보령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22.5km	43,514	500
하수관로 정비	충남	태안군	백사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신설 0.5km	1,034	312
하수관로 정비	충남	태안군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하수관로 정비 5.9km	9,955	1,998
하수관로 정비	경남	사천시	삼천포배수구역(동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하수관로 정비 L=6.865km	13,822	1,942
하수관로 정비	경남	사천시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차집관로(압송관) 설치 L=3.58km	10,500	1,944
하수관로 정비 BTL	충남	당진시	당진시 하수관거 정비 BTL사 업 시설임대료 지급	하수관로 52.975km	76,130	2,515
하수관로 정비 BTL	충남	보령시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지급	오수관로 신설 39.6km, 우수관로 신설 6.4km	69,464	2,160

세부사업명: 하수관로정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2-312), 하수관로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2-750)

보조율: 60~70%

자료: 환경부